

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은 前年度 대 부료가 20%가 인상이 됐다. 그랬을 경우 昨年度에 100萬원의 대부료가 今年度에는 120萬원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 설되는 조항을 적용하면은 13%만 인상된 113萬원이 되겠습니다. 같은 방법으로 두번 째도 50%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前年度 100萬원이 今年度에는 150萬원이 됩니다. 이 규정을 적용을 하면 16%만 인상된 116萬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번째도 100%가 인상됐다. 그랬을적에 100萬원이면 今年度에는 200萬원이 됩니다.

그래서 이 기준으로 계산한다 면은 대부 료가 119萬원이 됩니다. 참고사항으로 區有 財産에 대한 규정은 大統領令 第13533號에 의거해서 지난번 91年12月31日자로 이미 區 有財産法 施行令을 改正해 가지고 위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나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.

이미 區有財産施行令을 改正해 가지고 위 에서 설명드린 區有財産管理條例改正과 동일 한 내용을 담은 第26條2라는 조항을 새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. 따라서 區有財産法과의 형평도 유지하고 우리 區民들의 지나친 經 濟的負擔을 덜어드린다는 條例改正 배경하에 서 제안된 이번改正案이 原案대로 議決이 되어서 住民을 위한 對民行政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提案說明를 마치겠습니다. 이 提案說明이 내 용에서 다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議員님들께 配布해드린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이상입 니다.

○議長 金元泰 네 議員님들 의견 없으십니 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이 많음)

그러면 서울特別市麻浦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이 많음)

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 議員여러분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.

이것으로써 오늘 會議를 마치고 第4次 本會議는 3月10日 화요일 오전 10時에 開 議하겠습니다.

散會를 宣布하겠습니다.

○出席議員(30人)

金元泰	黃泰植	曹熙太
宋潤錫	金星煥	朴炆緒
李天揆	李鍾萬	李奉衡
具又石	韓賢德	金鍾烈
沈載昶	孫龍浩	洪性煥
俞南烈	金汶泰	李宗一
鄭然宇	金相烈	李康泌
金東暉	蔡雲錫	尹東鉉
洪吉杓	田炳萬	李仁求
尹正鏞	尹明奎	權五範

○出席公務員

財 務 課 長	李 泳 默
稅 務 1 課 長	吳 南 湜
產 業 課 長	金 瑛 燦
下 水 課 長	宋 寅 祿
保 健 指 導 課 長	愼 鏞 才

(參 照)

서울特別市麻浦區望遠洞水災民補償金支給條例中 改正條例(案)

1. 改正理由

서울特別市 麻浦區 望遠洞 水災民 補償金 支給條例에 의한 水災民의 範圍를 大法院의 判決과 形평에 맞추어 조정하고, 訴訟을 제 기하였으나 이를 취하한자를 구제하며 보상 신청을 할 수 없는데의 氣산일을 條例施行 日(91.11.9)에서 1992年12月31日로 하고 부 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에게 따로 정할 수 있게하여 주민의 權益을 保護하고 公務員이 아닌 補償審議委員에게 手當을 支給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主要骨子

· 水災民의 範圍 變更(條例 第2條 第1項)

當 初: 浸水地域에 住民登錄이 되어있고 실제 居住한 者와 무단전입하여 거주사실이 입증된 자로 浸水被 害를 입었으나 損害賠償 訴訟을 提起하지 않은 자.

變 更: 浸水地域에 居住한자로 한다.

다만 損害賠償訴訟이 進行중인 자와 확정판결을 받은자는 제외

한다.

· 補償申請을 할 수 없는데의 기산일 변경(條例 第5條第2項)

當 初: 條例 施行日(91.11.9)부터 6個月 이 경과한 때

變 更: 1992年12月31日이 경과한 때

· 海外移住者 國外出他者 在所者 등에게 申請期間 延長할 수 있는 但書追加

· 公務員이 아닌 補償審議委員에게 手當을 支給할 수 있는 條項 新設(第13條)

서울特別市麻浦區望遠洞水災民補償金支給條例中 改正條例(案)

서울特別市麻浦區望遠洞水災民補償金支給條例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2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2條(水災民의 範圍등) ①이 條例에서

“水災民”이라 함은 1984年9月2日 현재 望遠洞을 포함한 浸水地域에 거주한자로 한다.

다만 損害賠償訴訟이 進行중인 자와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.

第5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5條(補償申請)② 第1項에 의한 보상신청은 1992年12月31日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. 다만, 海外移住者, 國外出他者, 在所者 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補償審議委員會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第13條를 第14條로 하고 第13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第13條(委員手當) 補償審議委員會에 출석한 公務員이 아닌 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.

附 則

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2條(水災民의 範圍등)①이 조례에서 “수재민”이라 함은 1984年9月2日 현재 望遠洞을 포함한 浸水地域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자와 무단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 자로 浸水被害를 입었으나 損害賠償訴訟을 提起하지 않은 者를 수재민으로 본다.</p>	<p>第2條(水災民의 範圍등)①이 條例에서 “수재민”이라 함은 1984年9月2日 현재 望遠洞을 포함한 浸水地域에 거주한자로 한다 다만 損害賠償訴訟이 進行중인자와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제외 한다.</p>
<p>第5條(補償申請)②第1項에 의한 補償金 補償 신청은 이 條例 施行日부터 6個月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. (但書條項 新設)</p>	<p>第5條(補償申請)②第1項에 의한 補償 신청은 1992年12月31日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. 다만, 海外移住者, 國外出他者 在所者 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補償審議委員會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
<p>(新 設)</p> <p>第13條(施行規則) 생략.</p>	<p>第13條(委員 手當) 補償審議委員會에 出席한 公務員이 아닌 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수당을 支給할 수 있다.</p> <p>第14條(施行規則) 現行과 같음.</p>